

서식명 : 대출거래약정서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)
시행일 : 2025.06.28.(대출신청일 기준)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보증자리론 서식 개정 전후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			
제 2 조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 <중략>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기본약관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6 조, 제 7 조, 제 8 조제 2 항 및 제 3 항, 제 12 조, 제 13 조, 제 16 조, <신설> 및 고객고지사항 제 1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<생략> <중략> <신설>	제 2 조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 <중략>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기본약관 제 7 조 또는 이 약정 제 6 조, 제 7 조, 제 8 조제 2 항 및 제 3 항, 제 12 조, 제 13 조, 제 16 조, 제 18 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 1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<생략> <중략> <u>- 담보주택 전입에 관한 특약(구입용도) -</u> 제 18 조 구입용도이면서 담보주택이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담보주택 전입 ①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기로 확약합니다. ② 대출실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. 또한,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 년 간 보증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. <table><tr><td>위 특약사항 제 18 조에 동의함</td><td>본인</td><td>(인)</td></tr></table>	위 특약사항 제 18 조에 동의함	본인	(인)	전입특약 추가
위 특약사항 제 18 조에 동의함	본인	(인)			